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보험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편의 제공〉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83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8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12.
- (3) 회 부 일 : 2024.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생략) <u><신설></u>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호 다목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소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비(대차료의 35%)를 지급받을 뿐,¹⁾ 유사 차종의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험서비스와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²⁾이 제기되고 있음(참고자료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중 자동차보험 중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부분).

□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만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자동차를 지급받지 못하고, 교통비만을 지급받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자동차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1)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가입자가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하고,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 대차금액의 3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갈홍식. (2015.11.4.). 자동차보험 가입 장애인, 사고 나도 대차 안 돼?.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6>

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별(충북, 경기, 대전, 광주, 인천, 전북) 렌터카 업체 확인 결과,³⁾ 현재 장애인을 위한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점, 운전보조장치(핸드컨트롤러 등) 부착 비용이 1대당 평균 100 ~ 150만원⁴⁾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게도 교통비 지급만이 아니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대여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의 영역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영역에 속하므로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의 조치가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 또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장애인용 차량을 갖추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3)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출(충남, 전남, 경남 조합의 경우 의견 회신이 없었으며, 서울, 강원, 제주 등 기타 지역은 연합회 미가입 지역조합)

4) 전자장치 미부착: 100만원, 전자장치 부착: 150만원

- 셋째, 개정안의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 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⁵⁾에 근거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⁶⁾에 관한 검토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수용

-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차량 지급 등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동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호 다목의 자동차보험을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층 검토 필요

나. 손해보험협회

-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의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동차보험의 대차료·교통비 지급체계, 렌터카 업체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 보유·운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동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법률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소규모 렌터카 회사들의 희생이 따르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주의가 필요하며, 렌터카 회사들에 대한 장애인용 운전보조장치 구입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금 지급 또는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중 자동차보험 중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부분〉

3.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	---

	<u>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u> <u>(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u>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 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